

●기획재정부령 제960호

중국·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02월 27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

중국·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과대상 물품)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·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(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, BOPA Film)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.92.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(μm) 이하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금속 등이 증착(蒸着)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(合紙)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)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은 2022년 9월 14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3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관세율(%)
중국	1. 더저우동홍(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& Technology Co., Ltd.)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. 창저우패킹(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., Ltd.) 나. 창저우필름(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& Technology Co., Ltd.) 다. 충칭밍주(Chongqing Mingzhu Plastic Co., Ltd.) 라. 창저우플라스틱(Cangzhou Mingzhu Plastic Co., Ltd.) 마. 동홍신소재(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., Ltd.)	4.94
	2. 효성자싱[Hyosung Chemical Fiber (Jiaxing) Co., Ltd.]과 그 관계사인 효성화학주식회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4.90
	3. 그 밖의 공급자	4.94
태국	4. 에이제이피(A. J. Plast Public Co., Ltd.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4.61
	5. 그 밖의 공급자	24.61
인도	6. 코롱이나(PT. KOLON INA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8.60
네시아	7. 그 밖의 공급자	28.60

비고: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

◇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,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·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.